##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366

발의연월일: 2024. 8. 29.

발 의 자:임오경·민병덕·한민수

김윤덕 • 강유정 • 한병도

김재원 · 황명선 · 진선미

박수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행된 '최저학력제'란 학생선수가 일정 기준 학업 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대회에 출전할수 없는 제도이나 오히려 단체종목 내 팀원들의 피해, 연간 리그 대회참가 불가 등의 불이익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현행법은 고등학생의 경우 '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'이수 시 '최저학력제'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존재하나, 초·중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구제 수단이 없는 상태임.

이에 초·중등학생에게도 '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'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마 련하여 초·중등학생의 진로·진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(안 제11조제 1항).

법률 제 호

## 학교체육 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1항 단서 중 "고등학교"를 "초·중·고등학교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학교운동부 운영 등) ①	제11조(학교운동부 운영 등) ① -
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	
수준의 학력기준(이하 "최저학	
력"이라 한다)에 도달하지 못	
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	
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	
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	
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	
호에 따른 <u>고등학교</u> 또는 이에	<u>초·중·고등학교</u>
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	
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	
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	
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	
다.	<b>.</b>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